

2023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공개용 -

2023년 11월

2023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23. 11. 2.(목) 15:00~17:00

◆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 참 석 : 10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강성국
- 내부위원(3): 윤정훈(기록정책과장), 유숙현(보존서비스과장), 권영규(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3): 김은아(간사), 김지혜(열람담당), 허인석(시청각기록관리담당)

◆ 안건 및 회의 결과

일련번호	심의(보고)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3-4 (심의)	서울기록원 시청각 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내 기관(부서)에 시청각기록물 정책(안) 공유 필요○ 시청각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안) 수립 후 실무지침 별도 마련	가결

□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상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기록원 2023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전체 7명의 위원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은 안건이 한 개입니다. 먼저 간사가 안건 및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 의견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고 회의 종료 시 의결서 확인 및 서명을 통해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안건 및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 <안건 1: 서울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안)> 심의

<간사>

- 안건1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사전 검토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정책(안)에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은 저희 공개재분류 사업팀에서 작성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별도로 출력해놓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록원에서도 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고아 저작물’이라고 칭하면서 관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조

사해보니, 고아 저작물과 같이 저작권을 찾을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의견으로는 시청각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안)인데,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만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각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안)은 2023년 제3차 심의회 안건이었는데, 2차 안건인 공개재분류 결과의 생산부서 의견 조회 단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안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정책안이 완성되지 않았고, 연구를 하면서 저작권, 초상권에 집중하다보니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 내용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보완 작성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 의견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기록을 서비스하는데, 서울기록원도 영상기록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기록원도 기록원 유튜브 계정에서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 공개·서비스, 저작권 등에 대한 내부 지침이 부재하여 현재는 해당 영상 소개글에 저작권 또는 초상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연락을 달라는 단서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매뉴얼이 수립되면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 위원님께서 주신 검토 의견입니다. 서식을 좀 더 간략하고 간편한 통합 서식으로 개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은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네. 안건은 한 개인데요. 서울기록원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내용을 심의회에서 검토하는 의미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관한 사항 등을 변호사 위원님들께 여쭙보고 싶은 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허인석 주무관이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 연구보고서를 작성 할 때 허인석 주무관도 함께 하셨나요? 김은아 연구사가 작성을 했나요? 다른 주체는 누가 같이 하셨나요?

<간사>

- 올해 공개재분류 사업팀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초안을 작성하였고,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고 시청각기록물 담당인 허인석 주무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럼 정책보고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길게 보았을 때, 기록물에 대한 공개, 관리 등의 측면에서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간사>

- 네. 현재 정책안은 정책이다보니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로서의 생각은 정책은 기본 방향에 대한 설정인 것 같고, 정책을 토대로 시청각기록물의 수집, 활용 단계별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사업에서는 정책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까지 진행되었고, 내년에는 정책을 토대로 기록관리 단계별로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올해 공개재분류 사업의 과업은 7만건의 비공개기록물을 공개재분류 하는 것과 시청각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한 보고서 작성 까지입니다.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올해 과업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실무지침, 매뉴얼까지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 당연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인석 주무관의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인석 주무관>

- 시청각기록물 수집 사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내 부서인 언론담당관에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하고자 연락을 드렸고, 해당부서에서 말하기를 공모를 통해 수집한 기록이고, 시민과 본인 부서간의 계약에 따라 수집된 기록이므로, 같은 서울시에 있는 부서지만 타부서에서는 해당

기록을 활용할 수 없으며 참여한 시민들에게 또다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서울기록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록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 질문의 요점은 같은 서울시 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와 행사를 주최할 때 기록 생산·수집의 단서 조항에 결과물이 주최 부서에만 귀속이 된다는 문구가 있을 때 서울시 내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 서울기록원은 별도로 등기가 있지 않나요? 서울시 내 조직이 맞나요?

<○○○ 위원>

- 사업자등록번호는 있지만 등기는 별도로 없고, 서울시 내 조직입니다. 단, 실제로 법인격을 따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서울시 내 조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허인석 주무관이 말씀하신 건 서울시 어떤 부서가 시민들과 계약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허인석 주무관>

- 본래 취지는 저희 서울기록원에서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사진 위주로 수집이 되는데요. 해당 부서에만 기록을 놓고 있으면 아까우니 기록원에서 수집하여 보존·활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해당부서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이 해당 부서에 공모를 한 것이지 기록원에서 함께 공유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공모를 받을 때 공지한 내용이나 별도의 계약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에 말은 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말한 것일수도 있어요. 해당 사실을 판단하려면 계약 내용의 범위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들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되어 있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부서에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어도 서울기록원도 사실은 산하 기관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저작권자인 시민분도 크게 문제 제기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해당 기록물의 건수가 많지 않다면 그냥 전화로 말씀드려서 동의 받아도 나중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

- 저작권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은 해당 조항을 넣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기록원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이러한 규정이 없다 보니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책을 만들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공모전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공모전 같은 걸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이 수집되었다면, 예전에는 저작권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귀속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너무 크고 황포가 될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 말고 특히 영리 기업들이 할 때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일종의 배포나 복제 같은 권리 정도만 한정해서 귀속하고, 인격권은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리정보를 분명히 공모전에서 공지는 할 텐데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공모전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어느 부서에서만 사용하겠다고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서울기록원도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약서나 공지사항을 보지 않는 이상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인석 주무관>

- 공모전의 형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 중 인상적인 사진에 대한 공모전을 하는 경우 금, 은, 동 딱 3장의 선정작만 남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작을 대상으로 원본 사진도 보존하고, 원본 사진을 활용하여 출판한 간행물도 있어요.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산출물이 간행물이고 서울기록원의 입장에서는 원본 자체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약간 입장 차이가 있긴 한데 원본을 활용하려면 방금처럼 이렇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서울기록원에서의 활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 위원>

-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개별 사안마다 어떤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서울시 차원이나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권이라든가 2차적 저작권으로서의 활용 이런 것들은 동의해 주는 것으로 양식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개별 기록을 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때 양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고요. 대량으로 활용할 때 어떤 이권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울시에서 소송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 요즘은 공공기관들이 저작권 정책으로 공공누리 적용을 해서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공모나 수집을 할 때 부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 해서 사전에 1유형부터 4유형까지를 지정해놓는 것 같아요.
- 서울기록원에서도 시청각기록물을 수집 하려고 하는데, 수집이나 위탁을 받는 단계부터 활용을 고려하여 몇 유형으로 할지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작가분들은 자기 작품에 대해 단순히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작품으로 인지 하기 때문에 서울기록원이 디지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활용할 때 출처를 표기하고 상업적 이용과 제2차 저작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4유형으로 먼저 의사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추세이고 공공누리가 본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런 것까지 나중에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되려면 서울시 기획 부서에서 저작권 정책 같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록원이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처음 단계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수집하기도 어려워지고 수집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공개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방금 강성국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이번에 공개 서비스 정책이 잘 만들어지면 서울시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1년에 한 번

씩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교육을 통해서 지침을 내리고, 협조 공문도 보내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 위원>

- 제가 사전 검토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저작권 권리 관계나 개념도 사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심의 안건 자체가 공개 서비스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저작권 관리 정책만 해도 엄청 두꺼워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기관들이 갖고 있어야 할 저작권 관리 특히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자료 같은 게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공개 서비스 정책 앞 챕터 쪽에 이 저작권을 넣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용은 그래도 이제 많이 작성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더 자세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정보공개법의 제9조제1항제1호랑 제7호밖에 없거든요. 이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저작권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아닌지 그 우려에 대한 여부 정도만 기록물공개심의회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저작권 정책을 별도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 여기 만들어진 분량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리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기록원에는 시청각 기록이 많고, 앞으로도 시청각 자료가 많아질텐데, 그건 모두 저작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 관리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공개·서비스 정책은 따로 수립해서 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 위원>

-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정책안을 보면서 이게 서울기록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록원들도 있는데 다른 기록원에서는 이런 공개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서울기록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간사>

- 정책안 개발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시청각기록물 서비스를 하는 유관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bs 아카이브 이렇게 서면과 인터뷰를 병행하며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청각기록물의 공개·서비스, 저작권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정책을 가진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고, 개별 사안마다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기록원에서 2018년도에 ‘공공 기록물 서비스 표준’이라는 공공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원칙이라든지 또 서비스하는 역할과 주체 그리고 서비스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 차례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만 얘기하더라도 내용이 많고, 사례나 판례가 많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가 말하는 것처럼 서비스 정책을 명문화하는 것에 주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서비스과에서 시청각 기록물을 특정해서 공개·서비스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못하는 부분을 서울기록원에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예. 맞습니다. 저도 정책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책 개발 추진 근거, 필요성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썼는데 그러면서 국가기록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그런 정책이 없었나라는 의문이 생겼고, 서울기록원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안의 내용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서요. ‘공개·서비스 정책과 저작권에 대한 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사업마다 예산과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 여건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공개·서비스 정책은 그 정책대로 전문적으로 하고, 저작권 관리 정책은 또 따로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안이 있는지 여쭙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인석 주무관>

- 2022년에 언론담당관실이라고 시장 기록을 생산하는, 시청각 기록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 조순 시장 때부터 최근 21년 오세훈 시장 임기 전까지 생산한 영상과 사진 기록을 다 수집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목록을 정리하고 그 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부서 의견을 조회했을 때는 시장 기록 중에 방송국에 내보내는 영상도 있을테고, 이미 공개된 것도 있을 텐데 같은 행사 장소에서 찍힌 기록이 어떤 것은 또 노출이 안 되고 어떤 기록은 또 공개가 되는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요. 시장 기록이지만 저희는 시장기록이라는 영구기록을 수집한 것인데 그중에 시장실

안에서 찍힌 사진 중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사진도 있을 수 있으니 공개 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에서 찍힌 시장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사진인데 거기에 같이 나온 시민들의 얼굴이 너무 뚜렷하게 찍힌 사진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찍힌 사진은 임의적으로 공개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을 가지고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맞는 건지 궁금하고 저희가 공개했을 때 시민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는 그냥 죄송합니다. 내리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끝이 날 수 있는 사안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 위원>

- 일단 시장님들 공식 행사는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고 시장실 내부를 찍은 시청각기록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내부적으로 기록물을 보고 검토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시민들 제3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입니다.

<○○○ 위원>

- 초상권이란 것은 요즘에 퍼블리시티권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명인들에 대한 것이 주고, 일반인들이 이것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사생활 침해적인 사진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 위원>

- 이거 보통 얼굴을 블러 처리하잖아요.

<○○○ 위원>

- 블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진이 개인적 공간 내에서 누구도 찍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진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행사장,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은 뉴스에서도 노출되는 똑같은 상황이고, 단지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20년 후에 공개되는가, 30년 후에 공개되는가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 위원>

- 일부 시민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영상을 내려달라 이것 이상의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비스를 먼저 하고, 건별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블러처리나 영상 삭제를 하면 될 것이지 소송까지 들어올 수준은 아니에요.

<○○○ 위원>

- 물론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통념상 부끄럽거나 자기 본인이 봤을 때 수치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크게 문제 제기가 들어올 소지는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일일이 그분들이 누군지 확인이 안 돼서 동의를 못 받잖아요. 찰나에 찍힌 거라서 사전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문제 제기가 들어온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도 삭제 요청이 확고하다면 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 위원>

- 궁금한 게 이미 보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건 누가

그 영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허인석 주무관>

-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 서울기록원에서 먼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

- 초상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자료를 받고 ‘초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정책안 5페이지에 ‘초상권이 포함된 저작 재산권’ 이런 문구만 나오고 초상권이 좀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상권, 저작권 얘기를 거의 병행해서 말씀하셨는데, 초상권과 저작권이 또 별개거든요. 초상권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반영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촬영 동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받고, 정책안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초상권 침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상권 침해 예방 조치 이런 부분들은 문구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사>

- 초상권 부분은 저도 연구 조사를 하면서 저작권, 초상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이라는 게 저작권처럼 무슨 법 몇조 이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안에 초상권에 대해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기록을 공개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삭제하는 절차로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서 이 정책안에 반영은 하지 못했는데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저작권만큼 구구절절하게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촬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과 ‘침해로 인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초상권 침해 예방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촬영할 때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미동의 시 초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문구 몇 개만이라도 작성하면 될 것 같다.

<○○○ 위원>

-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문구를 넣는 것은 찬성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서울기록원이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의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상권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민사적인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 정도랑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장면이 찍혔는가 정도만 고려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민사에서 초상권과 관련한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형사에서는 불법 행위 그 다음 명예훼손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밖에 없고, 부정경쟁방지법 쪽에 유명인들 아까 말씀드린 퍼블리시티권인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파는데 허락받지 않고 파는 그런 상업적 행위에 관련된 것 정도인데,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정보 공개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일반적인 조항만 넣어서 ‘최대한 초상권을 존중한다.’ 식의 내용 정도만 넣어놓는 게 나중

에 서울기록원 내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왜 실행하지 않는가하는 공격을 받을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기록원의 업무 행위를 너무 제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 우리가 봤을 때는 공적인 인물인데, 당사자 개인이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히나 공인이 지워달라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막고, 오히려 공개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기록이 공개됐을 때 파장이 있을 수 있어 민감하겠다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개가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시청각 기록물 서비스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기록물 공개가 원칙인데 시청각 기록물은 소송에 대해서 지레 겁먹어서 가리다보면 공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단은 공개를 하고 사안별로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국가기록원부터 모든 시청각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기관에서는 암묵적으로 서비스 정책을 거의 비슷하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초상권도 저작권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생산되는 단계에서 촬영 허락을 명확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들이 찍는 사진은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언론이나 공공기관이 찍는 건 공연이나 배포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공개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촬영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배포에도 동의하는 측면이거든요. 공공기관이 찍는 것도 상업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우연찮게 뭘 찍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사

진에 주요한 어떤 인물로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사진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초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용도로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정책안에 있는 초상 이용 동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건지, 실제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는 사진 촬영할 때 같이 찍히기를 원하지 않거나 편집을 원하시는 분은 의사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해요. 공공기관도 사진 촬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하는 단계부터 처리가 되면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 위원>

- 그게 기록원이나 유관단체의 담당자분들이라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 위원>

- 그런 걸 좀 행정부나 법무부에서 많이 확산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 위원>

- 네. 정책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시청각 기록물도 많기 때문에 근현대사 관련해서는 기록이 거의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료라는 이름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불리기도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역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수립을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개방하고 공개해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책 수립에 담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한 가지씩만이라도 짚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실무 지침을 만들 때 사실 기록이라는 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용 동의서를 받고 이런 양해를 구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행사 사진은 그냥 찍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 법적으로 문제없이 그 말씀이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시청각 기록 관련해서는 그럼 다른 지자체 기록원이나 유관기관에 특별하게 내부 매뉴얼 같은 것들이 마련된 건 없는 거죠?

<○○○ 위원>

- 일반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있고 실질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 위원>

- 기관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공개자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 위원>

- 예를 들어서 국가기록원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깐 다른 기록원들분들은 참고하는 그런 자료도 없다는거죠?

<○○○ 위원>

- 시청각기록물을 특정해서 만든건 아니고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으로 되게 러프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위원>

- 그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저작권 관련한 것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상업쪽에서의 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활용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이런 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공공기관의 저작권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한두번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기록일 경우에는 어떤 예외 조항이 오히려 저작권 쪽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큰 차원으로 자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 너무 노력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러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

려 기록원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초상권과도 비슷한 얘기인데 특별하게 참조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고 관련 법조항도 없다면 우리가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천명하는 정도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양도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별첨으로 다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권리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서식이 내부 활용 자료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리 저작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필요한 자료와 공공기관에 시민이 제출하는 자료는 내용이나 형식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위원>

-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은 더 러프하게 가고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에 오히려 이런 소신이나 구체적인 문구를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야겠네요.

<○○○ 위원>

- 기록원에서 너무 내부의 일만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론화가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이나 저작권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관들이랑 업무 협조도 해보는 게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 위원>

- 국가기록원의 서비스 표준에 저작권 관련된 내용은 한 문단이에요. 그냥 한 단락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 위원>

- 그런데 이제 또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안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 위원>

- 초상권이용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문건에 서식을 포함시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할 것 같아요. 실무에서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서식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이 서식을 여기 정책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는 선택의 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 추측으로는 이용허락 같은 경우 서울기록원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기록이 수집되잖아요. 서울시 내부 기관(부서)과 서울기록원 사이 효율적으로 양도받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책안에 있는 서식은 민간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민간에서 수집할 때는 정확하게 이용 양도 동의서를 받고, 구체적으로 권리 범위도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공공기관 사이에서 기록을 수집할 때는 업무 소통이 되는 방식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록의 최초 수집 시점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기록원 내에서 만드는 지침을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위상을 끌어올리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들어서 기록원 내부에서만 적용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안 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 위원>

-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기록의 생산 단계에서 표준화가 되어서

이관이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만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무작정 반대를 못해요.

<○○○ 위원>

- 서울기록원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위원>

-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표준화시키는 건 조금 어렵죠.

<○○○ 위원>

- 서울시 의회에 올려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 이 안건이 서울기록원의 시청각 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이 없다면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가부를 정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위원>

- 참고로 간사가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기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서울 기록관리위원회에도 11월 10일까지 자문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 네. 근데 안건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완하여 적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

○ 회의때 오갔던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정리하면 타부서에서 기록을 수집하는 부분은 기록의 생산 단계부터 서울시 전반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집한 이후에 시청각 기록의 활용은 공개를 원칙으로하되, 일부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개별로 판단하는 절차로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럼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주십시오.

○ 심의 의결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의결서 작성안을 보여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오늘 안건은 서울기록원 시청각 기록물 공개 서비스 정책안 심의이고요. 검토 의견으로 서울시 내 기관에 시청각 기록물 정책안이 수립되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과 시청각기록물 공개 서비스 정책안 수립 후에 실무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담았고요. 의결 결과는 가결로 표기하였습니다.

<위원장>

- 혹시 저 검토 의견에 대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오고 간 얘기가 많은데 너무 간단하게 작성한 느낌은 있네요. 의결서만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위원장>

- 네. 그부분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 의결서 내용과 의결 내용 가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서 내용에 동의하시면 앞에 계신 참석 명부와 심의의결서에도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폐회**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16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